

빗썸 가상자산 거래 유의종목 지정 정책

회사는 하기와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 유의종목을 지정한다.

- ① 회사는 가상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가상자산의 거래 유의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심사요건	발행주체의 신뢰성	①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계획, 사업계획, 보안사고 발생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적시에 적절한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한 경우 ②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 지갑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가상자산이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등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용자 보호 장치	①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수단(블록 익스플로러)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보안	①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규 준수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제28조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법규 우회, 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용도, 목적 또는 기능이 불분명한 가상자산	①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술적으로 가상자산의 추가발행이 가능함에도 동 사실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 및 거래규모	① 2분기 연속으로 분기중 30일 이상 40억원 미만 ② 2분기 연속으로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가상자산 중 자사거래소 및 타 원화거래소의 분기일평균 거래회전율(일평균거래규모/해당 분기말 이용자 보유잔액)이 모두 1/100에 미달) (단,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공동 대응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공동 대응하여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거래소 정책	투자자 보호 필요에 따른 다양한 요소	①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지원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③ 가상자산의 효용성이 없거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가 미진한 경우 ④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하거나 거래지원 유지 적격성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관하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 결과를 거래 유의종목 지정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가상자산이 거래 유의종목으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재단에게 통보하고 거래유의 지정 사실을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및 계획 등을 검토하고 거래유의에 대한 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를 검토한다. 다만, 재단의 소명 및 계획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